

# 남 양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의 장
람	



제1410호  
2015년 2월 23일(월)

## 차 례

### 【 자치법규입법예고 】

- 남양주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공무원 당직·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----- 2

### 【 고 시 】

- 도시계획시설사업(대로3-102호선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----- 17
- 도시계획시설사업(중로1-105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----- 25
- 도시계획시설사업(중로3-314호선, 은성교 구간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----- 35
- 남양주시 도농4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----- 38
- 제청천등 15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(변경)고시----- 42
- 폐천부지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----- 43
- 소하천(제청천등 15개)의 지정(변경·폐지)에 관한 고시----- 44
- 소하천(제청천등 15개)구역 결정 및 지형도 도면고시----- 46
- 소하천(제청천 등 15개) 예정지의 지정(변경·폐지)에 관한 고시----- 47
-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----- 48
- 남양주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----- 62

### 【 공 고 】

- 도로점용허가 내용공고----- 63
- 도로지정공고 [2015-건축1과-신축신고-27, 김문ㄷ]----- 64

뒷면에 계속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 남 양 주 시 보

제1410호

남양주시 고시 제2015-51호

##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

- 경기도 고시 제2008-153호(2008.6.2)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, 경기도 고시 제2011-132호(2011.5.23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1-157호(2011.6.30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2-136호(2012.6.21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2-195호(2012.9.13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2-271호(2012.12.20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3-16호(2013.1.10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3-306호(2013.12.5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4-351호(2014.12.1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된 남양주 지금·도농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,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, 제5조, 제10조,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- 남양주 지금·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- 열람 장소 : 관계도서(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)는 남양주시청 도시재정비과 (☎031-590-8653)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2015. 2. 23.

## 남 양 주 시 장

가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유형·위치·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)

지 구 명	유형	위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지정목적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남양주 지금·도농 재정비촉진지구	중심 지형	남양주시 지금동, 도농동, 가운동일원	329,509	감) 47	329,462	기성시가지내 노후·불량 밀집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재정비를 포함한 복합적 개발을 통해 지금동, 도농동 일대의 동일 생활권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

# 남 양 주 시 보

제1410호

- ※ 남양주시 지금·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지형도면 : 게재생략
- ※ 지금·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중 2구역(47㎡) 감소 : 측량에 따른 면적정정

**나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연도**

- 변경사항 없음

**다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**

- 변경사항 없음

**라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(변경)**

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 분	면 적			구성비 (%)	비 고	
	기정	변경	변경후			
총 계	329,509	감) 47	329,462	100.0%		
택 지	소 계	187,518	감) 8	187,510	56.9%	
	주 거	109,000	-	109,000	33.1%	
	복합용지	29,130	감) 8	29,122	8.8%	
	상 업	28,287	-	28,287	8.6%	
	근생용지	1,589	-	1,589	0.5%	
	종교용지	1,524	-	1,524	0.5%	
	공업용지	17,988	-	17,988	5.5%	
기반 시설	소 계	141,991	감) 39	141,952	43.1%	
	도 로	73,830	감) 35	73,795	22.4%	
	철 도	28,459	-	28,459	8.6%	
	공 원	22,118	-	22,118	6.7%	
	주 차 장	(3,525)	-	(3,525)		
	녹 지	3,095	감) 4	3,091	0.9%	
	학 교	14,489	-	14,489	4.4%	

※ 존치관리구역이 포함된 수치임

※ 면적 증감내역 : 측량에 따른 면적정정

- 택 지 : 복합용지(2구역 8㎡감소)

- 기반시설 : 완충녹지(2구역 4㎡감소), 도로(2구역 35㎡감소)

# 남 양 주 시 보

제1410호

## 2)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(변경)

구 분	주택수(세대)			구성비 (%)	인구수(인)			구성비 (%)	비 고	
	기정	변경	변경후		기정	변경	변경후			
총 계	5,245	증) 17	5,262	100.00%	13,647	증) 45	13,692	100.00%		
촉진 구역	소계	1,781	증) 17	1,798	34.17%	4,631	증) 45	4,676	34.15%	
	40㎡이하	101	-	101	1.92%	263	0	263	1.92%	
	40~60㎡	574	증) 44	618	11.74%	1,492	증)115	1,607	11.74%	
	60~85㎡	705	감) 27	678	12.88%	1,833	감) 70	1,763	12.88%	
	85㎡초과	401	-	401	7.62%	1,043	-	1,043	7.62%	
존치관리구역소계	3,464	-	3,464	65.83%	9,016	-	9,016	65.85%		

※ 남양주시 건축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른 2구역 계획세대수 변경

## 3) 임대주택 건설 등 거주 대책(변경)

구 분	계				분 양				임 대				
	소계	60㎡이하	60~85㎡	85㎡초과	소계	60㎡이하	60~85㎡	85㎡초과	소계	40㎡이하	40~60㎡	60~85㎡	
계	기정	1,781	675	705	401	1,548	538	609	401	233	101	36	96
	변경	17	44	-27	-	17	44	-27	-	-	-	-	-
	변경후	1,798	719	678	401	1,565	582	582	401	233	101	36	96
	비율	100.00%	39.99%	37.71%	22.30%	87.04%	32.37%	32.37%	22.30%	12.96%	5.62%	2.00%	5.34%
주택재개발 정비사업	기정	797	556	241	-	660	419	241		137	101	36	-
	비율	100%	69.76%	30.24%	0.00%	82.81%	52.57%	30.24%	0.00%	17.19%	12.67%	4.52%	0.00%
도시환경 정비사업	기정	984	119	464	401	888	119	368	401	96	-	-	96
	변경	17	44	-27	-	17	44	-27	-	-	-	-	-
	변경후	1,001	163	437	401	905	163	341	401	96	-	-	96
	비율	100%	6.14%	16.47%	15.11%	34.11%	6.14%	12.85%	15.11%	3.62%	0.00%	0.00%	3.62%

※ 남양주시 건축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른 2구역 계획세대수 변경

# 남 양 주 시 보

제1410호

## 4) 교육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(변경)

구 분	면 적(m <sup>2</sup> )			구성비(%)	비 고	
	기정	변경	변경후			
촉진지구면적	329,509	감) 47	329,462	100%		
기 반 시 설	소 계	141,991	감) 39	141,952	43.1%	
	도 로	73,830	감) 35	73,795	22.4%	2구역 측량에 따른 면적정정
	철 도	28,459	-	28,459	8.6%	
	공 원	22,118	-	22,118	6.7%	
	주 차 장	(3,525)	-	(3,525)		
	녹 지	3,095	감) 4	3,091	0.9%	2구역 측량에 따른 면적정정
	학 교	14,489	-	14,489	4.4%	

## 5) 공원·녹지 및 환경보전계획(변경)

구분	시설명	개수	면적(m <sup>2</sup> 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공 원 녹 지	계	11	25,213	감) 4	25,209	
	근린공원	1	1,263	-	1,263	
	소공원	7	16,409	-	16,409	
	문화공원	1	4,446	-	4,446	
	완충녹지	2	2,894	감) 4	2,890	2구역 측량에 따른 면적정정
	경관녹지	-	201	-	201	

## 6) 교통계획

○ 변경사항 없음

## 7) 경관계획

○ 변경사항 없음

## 8) 광고물 관리계획

○ 변경사항 없음

# 남 양 주 시 보

제1410호

9)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사항(변경)

가) 촉진구역총괄(변경)

구분	위 치		면적(㎡)			비 율(%)	사업방식	
			기정	변경	변경후			
총 계			329,509	감)47	329,462	100.0%		
촉진구역	소 계 (6개 구역)		165,337	감)47	165,290	50.2%		
	1구역	1-1구역	남양주시 도농동 312-4 일원	16,035	-	16,035	4.9%	주택재개발사업
		1-3구역	남양주시 도농동 268-6 일원	20,886	-	20,886	6.3%	주택재개발사업
	2구역		남양주시 도농동 133 일원	6,287	감)47	6,240	1.9%	도시환경정비사업
	6구역	6-1구역	남양주시 도농동 53-1 일원	24,468	-	24,468	7.4%	도시환경정비사업
		6-2구역	남양주시 도농동 617-64 일원	64,917	-	64,917	19.7%	도시환경정비사업
	7구역		남양주시 도농동 1-19 일원	32,744	-	32,744	9.9%	도시계획시설사업
	소계 (7개 구역)			164,172	-	164,172	49.8%	
존치관리구역	존치4		남양주시 도농동 336-27 일원	1,589	-	1,589	0.5%	
	존치5		남양주시 도농동 65 일원	2,637	-	2,637	0.8%	존치시설
	존치6		남양주시 가운동 617-71 일원	1,595	-	1,595	0.5%	가운연립
	존치7		도농동 285-2	355	-	355	0.1%	철도시설
	존치8		남양주시 도농동 306-30 일원	25,966	-	25,966	7.9%	(1-2구역)
	존치9		남양주시 도농동 298-1 일원	65,354	-	65,354	19.8%	(3구역)
	존치10		도농동 39-3 일원	66,676	-	66,676	20.2%	(5구역)

※ 지금·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중 2구역(47㎡) 감소 : 측량에 따른 면적정정

# 남 양 주 시 보

제1410호

## 나) 촉진구역(변경)

구분	구역명		사업방식	면 적(m <sup>2</sup> )	사업방식 결정사유
기정	1구역	1-1구역	주택재개발사업	16,035	◦ 공업기능 상실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지 조성
기정		1-3구역	주택재개발사업	20,886	◦ 공업기능 상실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지 조성
기정	2구역		도시환경정비사업	6,287	◦ 국도6호선변 복합용지 개발을 통한 역세권 형성
변경				6,240	
기정	6구역	6-1구역	도시환경정비사업	24,468	◦ 도농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
기정		6-2구역	도시환경정비사업	64,917	◦ 도농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
기정	7구역		도시계획시설사업	32,744	◦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

※ 지금·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중 2구역(47m<sup>2</sup>) 감소 : 측량에 따른 면적정정

## 다) 존치관리구역(변경없음)

## 라) 존치시설구역(변경없음)

## 10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(변경)

구 분	면 적(m <sup>2</sup> )			구성비(%)		비 고	
	기 정	변 경	변경후	기 정	변 경		
합 계	329,509	감) 47	329,462	100.0%	100.0%		
주거지역	소 계	240,465	감) 37	240,428	73.0%	73.0%	
	제1종일반 주거지역	124,050	0	124,050	37.7%	37.7%	
	제2종일반 주거지역	40,511	0	40,511	12.3%	12.3%	
	제3종일반 주거지역	95	0	95	0.0%	0.0%	
	준주거지역	75,809	감) 37	75,772	23.0%	23.0%	
상업지역	소 계	38,249	0	38,249	11.6%	11.6%	
	일반상업지역	38,249	0	38,249	11.6%	11.6%	
공업지역	소 계	24,315	0	24,315	7.4%	7.4%	
	준공업지역	24,315	0	24,315	7.4%	7.4%	
녹지지역	소 계	26,480	감) 10	26,470	8.0%	8.0%	
	자연녹지지역	26,480	감) 10	26,470	8.0%	8.0%	

※ 용도지역 결정·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권자(시장)가 별도 결정·고시함.

※ 지금·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중 2구역(47m<sup>2</sup>) 감소 : 측량에 따른 면적정정

# 남 양 주 시 보

제1410호

가) 1-1구역(주택재개발)

○ 변경사항 없음

나) 1-3구역(주택재개발)

○ 변경사항 없음

다) 2구역(도시환경정비)

○ 변경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(%)		
	기 정	변 경	변경후	기 정	변 경	
합 계	6,287	감) 47	6,240	100.0%	100.0%	
주거지역	소 계	4,343	감) 37	4,306	69.1%	69.0%
	준 주 거	4,343	감) 37	4,306	69.1%	69.0%
녹지지역	소 계	1,944	감) 10	1,934	30.9%	31.0%
	자연녹지지역	1,944	감) 10	1,934	30.9%	31.0%

※ 지금-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중 2구역(47㎡) 감소 : 측량에 따른 면적정정

라) 6-1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

○ 변경사항 없음

마) 6-2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

○ 변경사항 없음

바) 7구역(도시계획시설사업)

○ 변경사항 없음

11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(변경)계획

○ 변경사항 없음

12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(변경)

가)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계획

구분	구역명		구역면적(㎡)	건폐율(%)	기준용적률(%)	계획용적률(%)	비고	
기정	1구역	1-1구역	주거	16,035	60	200.0	255.0	공동주택
기정		1-3구역	주거	20,886	60	210.0	280.0	공동주택
기정	2구역		준주거	6,287	70	350.0	500.0	주상복합
변경				6,240				
기정	6구역	6-1구역	상업	24,468	80	400.0	600.0(750.0)	상업(호텔계획시)
기정		6-2구역	준주거	64,917	70	350.0	455.0	주상복합
			상업		80	400.0	600.0(750.0)	상업(호텔계획시)
기정	7구역	준주거	32,744	70	350.0	450.0	도시계획시설 (환승센터+지원시설)	

주1) 6-1구역 / 6-2구역의 인센티브 용적률은 지하 연결광장 확보(65%) 및 지상부 리빙루프 설치(20%), 호텔계획시(150%)에 대한 용적률임

주2)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로서, 계획용적률 150% 범위내에서, 최소객실수 80실이상, 용적률 100%이상 확보하여야 함

주3) 지금-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중 2구역(47㎡) 감소 : 측량에 따른 면적정정

주4) 건폐율, 용적률은 "이하"로 적용함.



# 남 양 주 시 보

제1410호

나) 높이계획

○ 변경사항 없음

다) 기타건축계획 사항 및 지침

○ 변경사항 없음

라)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경미한 변경

○ 변경사항 없음

### 13)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(변경)

가) 촉진구역 기반시설부지 부담률(변경)

구분	구역명	구역면적 (㎡)	계획기반시설 ①	현황국공유지 ②	유상매입시설 ③	존치기반시설	순부담면적(㎡) ①-(②-③)	순부담률(%)	
기정	1구역	1-1구역	16,035	3,061	1,065	-	917	1,996	13.20
기정		1-3구역	20,886	6,097	2,985	802	2,219	3,914	20.97
기정	2구역		6,287	2,524	1,919	571	1,191	1,176	23.08
변경			6,240	2,485	1,844	483	1,163	1,124	22.14
기정	6구역	6-1구역	24,468	13,298	10,193	764	8,432	3,869	27.35
기정		6-2구역	64,917	27,743	20,044	2,491	14,119	10,190	21.47
기정	7구역	32,744	32,744	-	-	-	-	21.19	

주) 7구역 순부담률 = (기반시설 중 완충녹지 + 파출소) / (민간사유지 + 철도공사 소유 필지)

주) 기반시설 부담면적 중 건축면적 및 공공보행데크 면적은 제외

주) 계획기반시설 면적은 구역의 사업자 부담면적을 제외한 면적임

주) 지금-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중 2구역(47㎡) 감소 : 측량에 따른 면적정정

나) 촉진구역 기반시설부지 분담주체

○ 변경사항 없음

### 14)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
○ 변경사항 없음

### 15) 기타계획(방재계획, 정보화계획, 에너지순환계획,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, 특성화계획)

○ 변경사항 없음

### 16) 재정비촉진구역별정비계획

가) 1-1구역(주택재개발)

○ 변경사항 없음

나) 1-3구역(주택재개발)

○ 변경사항 없음

다) 2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

(1)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(변경)조서

# 남 양 주 시 보

제1410호

구 분	명 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증·감	변 경	
변 경	2구역	남양주시 도농동 133일원	6,287	감)47	6,240	

※ 측량에 따른 면적정정

## (2) 정비계획(변경)

### (가)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 정	증·감	변 경		
합계		6,287	감) 47	6,240	100.0	
정비 기반 시설 등	소 계	2,524	감) 39	2,485	39.8	
	도 로	1,353	감) 35	1,318	21.1	
	녹 지	1,171	감) 4	1,167	18.7	
택지 (획지)	소 계	3,763	감) 8	3,755	60.2	
	2-1-a	3,763	감) 8	3,755	60.2	복합용지

※ 측량에 따른 면적정정

### (나)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계획(변경)

#### ◦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(변경)

구분	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정 비 개 량 계 획 (동)					비 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계	존 치	개 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기정	2구역	6,287	-	-	남양주시 도농동 133일원	6	-	-	6	-	
변경	2구역	6,240	-	-	남양주시 도농동 133일원	6	-	-	6	-	

※ 측량에 따른 면적정정(47㎡ 감소)

# 남 양 주 시 보

제1410호

◦ 건축시설계획(변경)

결정 구분	구분	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	위치	주 된 용 도	건 폐 율 (%)	용 적 률 (%)			
	명칭	면적(㎡)		명칭	면적(㎡)								
		기정	변경		기정	변경							
변경	2 구역	6,287	6,240	2-1 -a	3,763	3,755	남양주시 도농동 133 일원	주상복합	70	500 이하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○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											
		구분	합계	분양 (㎡)					임대 (㎡)				
				소계	40이하	60이하	85이하	85초과	소계	40이하	60이하	85이하	85초과
		세대수	기정	177	177	-	119	58	-	-	-	-	-
			증·감	증)17	증)17		증)44	감)27	-	-	-	-	-
변경	194		194		163	31	-	-	-	-	-		
비율(%)		100.0	100.0	-	84.00	16.00	-	-	-	-	-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○임대주택 건립비율											
		- 해당사항 없음											
		○주거비율: 90%이하			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○건축법,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											
		○지급도농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											

\* 최고높이는 건축법령에 의거 별도 지정

○ 변경사유서

변경내용	변경사유
구역 및 획지면적 변경	측량에 따른 면적정정
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변경전(177세대) → 변경후(194세대)	남양주시 건축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른 도농2구역 계획세대수 변경내용 반영

(다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: 사업시행시 건축법등에 관한 규정에 준수하여 설치함.

# 남 양 주 시 보

제1410호

## (라) 정비사업 시행계획(변경)

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			홍수등 취약요인에대한 검토결과	비고
			현황	증·감	계획			
					기정	변경		
도시환경정비사업	1단계 (2011)	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시행자	27	증)167	177	194	-	사업시기는 주변구역 추진현황에 따라 조정가능

※ 남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도농2구역 계획세대수 변경

## (마)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

○ 변경사항 없음

## (3)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(변경)

○ 도 로(변경없음)

○ 철 도(변경없음)

○ 녹 지(변경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증·감	변경		
변경	1	녹지	완충녹지	도농동 46-2철 일원	7,435 (1,171)	- 감)4	7,435 (1,167)	경고386호 ('76.12.18)	

○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완충녹지	·변경 기정)1,171m <sup>2</sup> → 변경)1,167m <sup>2</sup> 감) 4m <sup>2</sup>	2구역 측량에 따른 면적정정

## 라) 6-1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

○ 변경사항 없음

## 마) 6-2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

○ 변경사항 없음

## 바) 7구역(도시계획시설사업)

○ 변경사항 없음

## 17)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-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 용도지역의 결정·변경과 도시계획시설(신설, 변경, 폐지)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권자(시장)가 별도 결정·고시한다.

# 남 양 주 시 보

제1410호

## 가) 재정비촉진지구 결정(변경)조서

지 구 명	유형	위치	면 적(㎡)			지정목적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남양주 지금·도농 재정비촉진지구	중심 지형	남양주시 지금동, 도농동, 가운동일원	329,509	감)47	329,462	기성시가지내 노후·불량 밀집주거지역 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재정비를 포함한 복합적 개발을 통해 지금동, 도 농동 일대의 동일 생활권을 체계적이 고 종합적인 개발

※ 남양주시 지금·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※ 2구역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

## 나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기 정	변 경	
합 계		329,509	감) 47	329,462	100.0%	100.0%	
주거지역	소 계	240,465	감) 37	240,428	73.0%	73.0%	
	제1종일반 주거지역	124,050	0	124,050	37.7%	37.7%	
	제2종일반 주거지역	40,511	0	40,511	12.3%	12.3%	
	제3종일반 주거지역	95	0	95	0.0%	0.0%	
	준주거지역	75,809	감) 37	75,772	23.0%	23.0%	
상업지역	소 계	38,249	0	38,249	11.6%	11.6%	
	일반상업지역	38,249	0	38,249	11.6%	11.6%	
공업지역	소 계	24,315	0	24,315	7.4%	7.4%	
	준공업지역	24,315	0	24,315	7.4%	7.4%	
녹지지역	소 계	26,480	감) 10	26,470	8.0%	8.0%	
	자연녹지지역	26,480	감) 10	26,470	8.0%	8.0%	

※ 2구역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

# 남 양 주 시 보

제1410호

다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(1) 도로

○ 변경사항 없음

(2) 주차장

○ 변경사항 없음

(3) 철도

○ 변경사항 없음

(4) 녹지(변경)

○ 녹지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			7,435 (3,095)	- 감) (4)	7,435 (3,091)		
변경	1	녹지	완충녹지	도농동 46-2철 일원	7,435 (3,095)	- 감) (4)	7,435 (3,091)	경고386호 (76.12.18)	측량에 따른 면적정정

주) ( )안의 면적은 지금·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내 포함된 면적임.

○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완충녹지	·구역편입면적 변경 기정)3,095㎡ → 변경)3,091㎡ 감) 4㎡	2구역 측량에 따른 면적정정

(5) 공 원

○ 변경사항 없음

(6) 공공공지

○ 변경사항 없음

(7) 공공청사

○ 변경사항 없음

(8) 학교

○ 변경사항 없음

# 남 양 주 시 보

제1410호

(9) 문화시설

○ 변경사항 없음

라)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관련사항은 「남양주 지금·도농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도서」에 따름

마)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